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제헌절과 준법정신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자고 의결해서 2008년부터는 쉬는 날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다. 따라서 올해 제헌절은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아니므로 18일에 정상 근무를 해야 한다.

제헌절 경축식은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난 74여 년의 헌정사를 회고하며, 국민에게 헌법 정신 및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에도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각 가정 및 관공서, 단체에서는 태극기를 달고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자유 민주시민임을 자랑하며 헌법전문만이라도 읽어보는 날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 됐고 미군정(3년)을 거쳐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국민 총선거로 국회의원 198명(제주도 2명은 선출 못 함)을 선출해 5월 31일부터 제1대 국회가 개원돼 민주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해, 조선왕국의 건국기념일이었던 7월 17일에 자주독립의 뜻깊은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하게 됐으니 이날이 제헌절이며, 8월 15일에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 정부가 출범하게 됐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만든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국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했고 그 법으로 통치하는 법치

주의 국가다. 어떤 특권층이 마음대로 정치할 수 없고 국가의 모든 국사는 법으로 처리되고 법은 모든 국민에게 천칭처럼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헌정 74주년을 뒤돌아보면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과 군사쿠데타에 의한 개헌, 당리당락에 의한 개헌이 있었으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우리 국민은 민주 헌법을 수호해 민주 헌법을 지켜 왔다. 법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 자세다. 교도소에 갇힌 수많은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선진국일수록 교도소가 비어 있고 간수들이 할 일이 없다고 한다.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었으며 지키지 않는다면 법으로서 의미가 없다. 국민이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은 국민이 지켜야 법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이며 법을 지키는 정신이 준법정신이다. 법보다 앞선 것은 양심이다. 양심은 하느님의 마음이라 한다. 법이 없어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면 법은 지켜지고 있다.

법은 어떤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지켜나갈 의무가 있는 것이다. 준법정신은 법을 지켜나가는 정신이다. 그 나라 국민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하겠다.

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법을 잘 지킨다. 미개한 나라의 국민은 법을 예사로이 생각하고 잘 지키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예절을 잘 지키는 문화민족으로 자랑해 왔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데에는 소홀한 점이 있어 남들의 비웃음을 산 일도 더러 있었다. 요즘도 탈세하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준법정신이 바로 나라의 발전을 꾀하는 지름길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뜻깊은 제헌절을 맞이해 우리가 모두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이 돼야 한다. 물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다스리는 법원과 법에 따라 정치하는 행정부에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먼저 법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하며,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질서가 있고 배려가 있는 주장을 해 법을 잘 지키는 민주시민의 전통을 이어 가야 하며 제헌절을 맞이하는 우리 국민은 법을 알고 법을 잘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선진국 국민으로서 소명을 다해야 한다.

7월 17일은 제74주년 제헌절이다. 올해는 제헌절이 일요일이어서 제헌절에 대한 사전교육이 교육하는 가정과 교육기관 관공서에선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따라 주권을 가진 국민이 법으로 통치하며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법치주의 국가다.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의 하나인 제헌절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법인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됐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며, 참여정부 국무회의에서

독자기고

“햇갈리는 우회전 방법, 원칙을 지켜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자”

박원영
광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자로 시행됐다.

12일부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서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된 법안이 12일자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운전자들이 많고, 경찰의 계도 활동에 단속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원칙만 명심하면 된다.

우선,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할 때

도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가장 많이 햇갈려하는 부분은 우회전을 할 때 보행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 운전자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다.

이 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단, 보행신호등만 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아직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명확하다.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것이다.

일핏 보기에는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본다면 원칙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어려울 것이 없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이기 때문에 항상 유념하고 운전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사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알로에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